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상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507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5월 28일

발 의 자 : 장상기 의원(1명)

찬 성 자 : 권수정, 김경영, 김제리,
김태수, 김평남, 김희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송명화, 송아량,
양민규, 이광성, 이성배,
이영실, 이정인, 이태성,
임종국, 전석기, 최 선,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의원(24명)

1.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정하고,
-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의 개정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동주택 등의 벽면이용간판은 간판의 총 수량에서 제외(안 제2항제10호)
- 나. 공동주택 등의 벽면이용간판 표시근거 마련(안 제4조제1항제9호)

다.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설정
(안 제22조제1항제4호)

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처리기간 변경 및 재심의 근거 마련(안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의 안내를 위한 자기건물의 주명칭 및 보조명칭(동 표시 및 상징형 도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건물당 1개

제4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의 경우에는 외벽에 주명칭 및 보조명칭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9호 가목 중 ‘1.8미터’를 ‘2.4미터’로, 나목 중 ‘1.5미터’를 ‘2.0미터’로, 라목 중 ‘30센티미터’를 ‘40센티미터’로 하고, 바목은 삭제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도로에 제3조의2에 따른 전자빔을 이용하여 문자·도형 등을 투사하여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공공목적 광고물에 한하며,’를 ‘도로(제3조의2에 따른 전자빔을 이용하여 문자·도형 등을 투사하여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공공목적 광고물에 한한다.) 이 경우’로 한다.

제2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옥외광고 업무 담당과장(당연직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본문 중 ‘15일’을 ‘20일’로 하고, 단서 중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를 ‘20일(소위원회는 10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에 따라’로 한다.

제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제4항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 받은 광고물등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라 허가·신고 또는 협의·심의 등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3조(벽면 이용 간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9호는 이 조례 시행 후 표시·설치하는 벽면 이용 간판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9. (현행과 같음)</p> <p><u>10.<신설></u></p>	<p>제2조(광고물등의 표시방법)</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9.(현행과 같음)</p> <p><u>10.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의 안내를 위한 자기건물의 주명칭 및 보조명칭(동 표시 및 상징형 도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건물당 1개</u></p>
<p>제4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p> <p>① (현행과 같음)</p> <p>1. ~ 8. (현행과 같음)</p> <p><u>9.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외벽에는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 표시를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u></p> <p>가. 명칭표시는 <u>세로 1.8미터 이내</u>, 가로는 해당 벽면 가로 폭의 3분의2 이내</p> <p>나. 명칭의 보조표시 및 동 표시는 <u>세로 1.5미터 이내</u>, 가로는 당해 벽면 가로 폭의 2분의1 이내</p> <p>다. (생 략)</p> <p>라.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 <u>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u>여야 한다.</p> <p>마. (생 략)</p> <p>바. <u>공동주택의 명칭 또는 동 표시는 제2조제1항에 따른 간판의 수량 산정에 있어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 한다.</u></p> <p>② ~ ⑥ (생 략)</p>	<p>제4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p> <p>① (현행과 같음)</p> <p>1. ~ 8. (현행과 같음)</p> <p><u>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의 경우에는 외벽에 주명칭 및 보조명칭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u></p> <p>가. 명칭표시는 <u>세로 2.4미터 이내</u>, 가로는 해당 벽면 가로 폭의 3분의2 이내</p> <p>나. 명칭의 보조표시 및 동 표시는 <u>세로 2.0미터 이내</u>, 가로는 당해 벽면 가로 폭의 2분의1 이내</p> <p>다. (현행과 같음)</p> <p>라.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 <u>돌출 폭은 40센티미터 이내</u>여야 한다.</p> <p>마. (현행과 같음)</p> <p><u>바.<삭 제></u></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마목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4. (생략)</p> <p>5. 「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도로에 제3조의 2에 따른 전자빔을 이용하여 문자·도형 등을 투사하여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공공목적 광고물에 한하며, 시장 또는 구청장은 -----한다.</p>	<p>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 마목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4. (생략)</p> <p>5. 「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도로(제3조의 2에 따른 전자빔을 이용하여 문자·도형 등을 투사하여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공공목적 광고물에 한한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구청장은 -----한다.</p>
<p>제2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 제2항에 따라 시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p> <p>2.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국어·디자인·조명 등 광고물 관련분야의 전문가</p> <p>3. 시의원(관련 상임위원회 위원)</p> <p>4.<신설></p> <p>④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u>15일</u>(소위원회는 10일)이내에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u>1회 15일</u>(소위원회는 10일) <u>이내에 한하여</u>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⑤ (생략)</p>	<p>제2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시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3 (현행과 같음)</p> <p>4. 옥외광고 업무 담당 과장(당연직으로 한다)</p> <p>④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u>20일</u>(소위원회는 10일)이내에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u>1회 20일</u>(소위원회는 10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⑤ (현행과 같음)</p>
<p>제2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p> <p>① (생략)</p> <p>② (생략)</p> <p>1. ~ 2. (생략)</p> <p>③<신설></p>	<p>제2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③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제4항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p>